제 1조. 계약의 목적

임대인은 본 계약기간 동안 대관시설을 사용자에게 임대하며,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.

이 기준은 대관시설(부대시설, 장비 및 부속 공간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이하 '대관시설'이라 한다.)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. 계약의 성립

본 계약은 사용자의 사용신청(홈페이지 이용), 이용약관 동의와 임대인의 사용승인으로 성립된다. 사용자는 임대인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임대인은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를 승낙하지 아니한다.

가) 사용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

나) 가족동반행사, 친목 위주의 문화행사 등 개인적인 행사의 경우

다)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

라) 정치성의 행사 (강의, 당원교육, 선거관련집회, 단식투쟁, 혈서작성 성격의 집회, 기타 등)

마) 대관시설 파손, 타 이용자의 불편, 주변 분위기 문란의 우려가 있는 집회
예시) 종교집회, 고성 또는 기물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, 악기를 동원한 집회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(샴페인, 맥주 포함)가 동반되는 회의 등

바) 외부인을 상대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을 겸한 집회

사) 대관시설 사용(임대)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및 대관료를 미납한 업체 등
예시) 예약 후 대관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행위, 대관일자를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 등

아) 대관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하거나, 회의장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

자)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거나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차) 음식물 반입, 전열기구 사용 등 대관시설의 관리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제 3조. 임대료의 납입 및 환불

3.1. 대관 임대료 납입기한 : 사용일 D-7영업일(임대료 전액, 현금 납부)

3.2. 대관 임대료 납부 후, D-6영업일부터는 예약 취소 및 수정 요청이 불가하다.

3.3. 제3조 1항의 기간 내에 임대료를 미입금 시 예약된 행사는 취소되며,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로 3회 이상 예약이 취소된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3.4. 임대인은 불가항력 또는 국가시책 변경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대료 반환 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4조. 대관시설 운영, 사용의 변경 및 취소

4.1. 운영시간은 평일 09시~22시, 주말(토, 일, 법정공휴일 포함) 09시~22시이다.

4.2. 사용자는 대관시간에 준비시간과 퇴장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하며, 견적서에 명시한 시

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 시간 초과 시, 관리인은 사용자에게 퇴실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불이행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 (10분 초과 사용 시 1시간 이용료 부과)

4.3. 사용자는 부대 시설물(광고 배너, 책상 등)의 이용 및 설치를 원할 경우, 사전에 반드시 관리인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 시 현장 관리인(보안 요원 포함)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.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관리인 임의로 해당 자재를 조치 및 철거가 가능하다.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, 철거와 관련된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.

4.4. 화환은 일절 반입 금지이며, 부득이하게 배송되어 온 경우, 반드시 수거해 가야한다.

4.5 대관시설에는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나, 행사에 맞춘 배치는 사용자 측에서 직접 해야 하며 퇴실 시 원상복구한다.

4.6 모든 행사의 노트북 및 자료, 레이저포인터, 케이블류, 변환 젠더류는 주최 측에서 지참해야 한다.

4.7.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가)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
나)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

다) 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

4.8. 상기 조항에 의거 예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납입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,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.

제 5조. 계약의 해제 및 사용중지

5.1. 임대인은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가)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기일까지 예약금 및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

나) 사용자가 사용일정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

다) 사용자가 행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

라) 판매행위 등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

마) 사용자가 법령위반, 반사회 반질서적 행사, 시설파손 우려가 있는 행사 등 회의실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

바) 대관시설이 일부라도 훼손될 위험이 있거나 지나친 소음 유발 등으로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사) 사용자가 회의장 사용권을 임대인의 별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

아) 사용자가 기타 계약 또는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

자)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임대인의 긴급 및 중요행사 또는 회의 등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,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, 사용시간, 사용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5.2.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즉각 회의실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제7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다.

5.3.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또는 사용중지 된 경우 사용자는 납입한 대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,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. (단, 자) 조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, 임대인이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반환한다.)

제 6조. 목적물의 사용 및 금지사항

6.1.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장소 및 시설, 부대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임대인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 등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6.2.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임대인은 제5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가) 통로,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, 광고물의 설치, 게시, 부착 또는 각종 기기의 방치 행위

나) 사용자가 사전 승인 없이 대관시설 및 설비(악기를 포함한다)의 배치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반입하는 경우

다)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객석, 로비 및 무대 등에 행사와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

라) 폭발물,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 행위

마)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 및 판매 행위

바) 승인 외 시설 사용 행위

사) 생수 이외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
아) 음주자, 전염병 보균자 출입금지

제 7조.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

7.1. 행사 중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,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하여야 하며, 제 3자에게 발생한 인적, 물적 피해 및 사고에 대하여 행사 주관 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
7.2. 사용자는 사용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설비와 제공된 장비·비품을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, 사용 중 발생한 파손 및 훼손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7.3.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대행하며, 실 소요경비 및 원상복구 지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고, 이 변상비용을 작업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8조. 불가항력

천재지변, 재앙, 국가시책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9조. 대관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 등의 변경

사용자는 임대인과 계약 시, 회의실의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이 임대인의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, 조세공과금의 증감, 경제정세의 변동, 물가상승, 기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요율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요율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변경요율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10조. 용어해석

10.1. 본 약관 및 규정의 내용 중 용어해석의 이의가 있을 시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.

10.2. 본 약관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문제 발생 시, 임대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다.

제 11조. 준거법 및 분쟁

11.1. 본 계약의 법률적용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.

11.2. 본 계약에 관련하여 당사자간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. 당해 판결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간 구속력을 가진다.